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866,470,916	25,994,127
일반회계		843,259,430	25,297,783
특별회계		23,211,486	696,345
	기타특별회계	23,211,486	696,345
	주차장특별회계	19,515,943	585,478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370,977	41,129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960,034	58,801
	기반시설특별회계	336,000	10,080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8,532	856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안'과 같다.
-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.
- 제 4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해당없음.
- 제 5조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- 제 6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 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과목 (2) 공공요금 및 제세
 - ※ 예산서 재원표기
 - [국] 국고보조금, [균]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, [기] 국가기금보조금, [시] 시비보조금
 - [특] 특별교부세, [교] 특별조정교부금, [구] 자체재원, [채] 지방채